

의안번호	2204096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4. 11. 04.
추계번호	24D2691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안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신장애 판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6,700만원, 2030년 6억 9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4억 6,200만원(연평균 6억 9,2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심신장애 판정기한 연장 (제33조제1항)	667	690	713	696	696	3,462	692

주: 1. 심신장애 판정기한 연장(제33조제1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기한이 현행 퇴직 후 6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연장되므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
3.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기한이 연장되어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수가 1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제1항(장애보상금)	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18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3조제1항(장애보상금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신장애 판정기한을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경우,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로 추가재정 소요 예상
 - 장애보상금은 전상, 특수직무공상, 일반장애(병사에 한하여 지급)에 따라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본 추계에서는 일반장애에 한정하여 개정안에 따라 판정기한의 연장으로 지급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 - 전상: 연평해전 등과 같은 전투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
 - 특수직무공상: 비무장지대·접적지역 수색·정찰 등과 관련된 부상·질병
 -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은 특수한 상황에 발생하는 장애로서 대상자 수가 연간 10여 명이고 일반적으로 장애 발생 후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판정이 완료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함
-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기한이 연장되어 일반장애의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수가 1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⁾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실시하도록 한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5%	2.1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장애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신장애 판정기한을 퇴직 후 6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
- 본 추계에서는 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에 1인당 장애보상금을 곱하여 산출
 - (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) 개정안에 따라 심신장애 판정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는 2026년 29명, 2030년 29명으로 추정
 - 국방부에 따르면, 일반장애에 따른 장애보상금은 병사에 한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2023년 기준 318명 발생
 - 본 추계에서는 대상자 연령을 20세로 보고, 추계기간 동안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(2023. 12)의 각 연도별 20세 남성의 전년대비 증가율에 따라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가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
 -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는 앞서 언급한 방법대로 추정한 지급대상자 수의 10%로 가정

[표 2] 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 추정: 2024~2030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법 기준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(a)	318	319	294	286	297	314	293	289
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(=a×10%)	-	-	-	29	30	31	29	29

주: 2023년 현행법 기준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는 실적치로서 318명(국방부 자료)이고, 이후에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(2023. 12)의 각 연도별 20세 남성의 전년대비 증가율, 2024년 0.2%, 2025년 -7.7%, 2026년 -2.6%, 2027년 3.7%, 2028년 5.8%, 2029년 -6.7%, 2030년 -1.4% 적용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1인당 장애보상금) 2026년 2,300만원, 2030년 2,400만원으로 추정
 - 장애보상금은 ‘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× 등급별 배수’로 산정
 - 국방부에 따르면, 2023년 일반장애 기준 1인당 장애보상금은 2,200만원
 -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근 3년(2022~2024년) 평균 증가율 1.2% 적용

[표 3] 1인당 장애보상금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1인당 장애보상금	23	23	23	24	2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장애보상금 심신장애 판정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 6,700만원, 2030년 6억 9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4억 6,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증가하는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(a)	29	30	31	29	29	-
1인당 장애보상금(b)	23	23	23	24	24	-
추가재정소요(=a×b)	667	690	713	696	696	3,46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장애보상금 심신장애 판정기한의 연장으로 일반장애 지급대상자 수가 10%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